

## 신규 투자확인신청서(확인서)

※ 바탕색이 어두운 칸은 신청인이 적지 않으며, [ ]에는 해당되는 곳에 √ 표를 합니다.

접수번호	접수일	처리기간	10일
------	-----	------	-----

신청인	회사명(법인등록번호 또는 사업자등록번호) (전화번호: )	
	대표자 성명	생년월일
	업종(한국표준산업분류상 5단위)	생산품명

투자 규모	계	백만원
	건축비	백만원
	기계시설비	백만원
	부대시설비	백만원
	기타(비품, 차량 등)	백만원

「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」 제5조(외국인근로자 도입계획의 공표 등) 및 「해외진출기업의 국내복귀 지원에 관한 고시」 제13조제3항(사실관계의 확인)에 따라 위와 같이 신규투자금액 확인을 신청합니다.

년 월 일

신청인

(서명 또는 인)

산업통상부장관

귀하

「해외진출기업의 국내복귀 지원에 관한 고시」 제13조제3항(사실관계의 확인)에 따라 위와 같이 신규 투자하였음을 확인합니다.

년 월 일

산업통상부장관

직인

### 첨부서류

신청인(신고인) 제출서류	1. 국내복귀기업 선정확인서 사본 2. 투자내역리스트, 투자실적증빙자료 사본(계약서, 세금계산서, 입금확인증 등)	수수료 없음
---------------	--	--------

### 처리 절차

